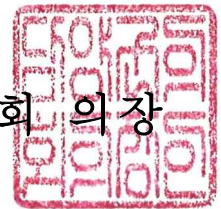


담양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. 11. 18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
2. 개정이유

2022. 1. 13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「지방자치법」을 통해 도입된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(정책지원관)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(정책지원관)에 대한 규정 신설
(안 제4조의 2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11. 18.~11. 23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
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

담양군의회 사무과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
2. 의견

관련조문

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

성명

)

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지원정수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담양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담양군의회 사무과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90조 내지 제92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사무과의설치)”를 “(사무과의 설치)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담양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④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.

⑤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 이 경

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5항에 따른다.

제5조 중 “**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**”를 “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담양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 정수조례</u>	<u>담양군의회 사무과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 법 제90조 내지 제92조</u>의 규정 에 의하여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 회“라 한다)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 직원의 정수 (이하 “정원“이라 한다)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. 제2조(<u>사무과의 설치</u>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조(목적) ----- <u>지방자치 법 제102조 및 제103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조(<u>사무과의 설치</u>) ① · ② (현 행과 같음) 제4조의2(<u>정책지원관</u>) ① <u>담양군 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“이라 한 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</u> ② <u>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 · 조사 · 연 구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 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</u>

	<u>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</u> ③ <u>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 ④ <u>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.</u> ⑤ <u>정책지원관은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.</u>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<u>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</u> 로 정한다.	제5조(직원의 정원) ----- ----- <u>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</u>-----.